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군 인 사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서 욱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사관후보생,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사유 조항 신설
(제9조의3)

- 군인사법에서 사관후보생,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교육기간 중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퇴교시킬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3(퇴교사유) ① 법 제11조의3제3항 및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,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시킬 수 있다.

1. 법규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, 사관후보생,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나 명령을 위반하여 군기를 저해한 때
2. 학술·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수료의 가망이 없을 때
3. 질병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

② 제1항에 대한 퇴교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3(퇴교처분) ① 법 제11조의3제3항 및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 후보생,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시킬 수 있다.</u> <u>1. 법규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, 사관후보생,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나 명령을 위반하여 군기를 저해한 때</u> <u>2. 학술·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수료의 가망이 없을 때</u> <u>3. 질병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</u> <u>② 제1항에 대한 퇴교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6243